

19.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청 원 자 : 강금수
- 소개의원 : 박갑상 의원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15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9일
- 상정일자 :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0년 11월 23일), 채택(본회의 부의)

2. 청원취지(요지)

-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음.
- 대구시 또한 '17년 시정혁신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혁신 과제로 채택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보고서를 만든 바 있으므로 이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계획과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성과 평가와 관리, 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을 시민청원인들*과 함께 청원함.

※ 명부에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다수인 공동 청원은 아님.

3. 소개의원 의견

- 공공기관과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헌과 환경보호, 노동 및 성평등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경영의 기본계획과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하고자 함.

4. 조사내용

가.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개념은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예컨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분별한 자원개발, 환경오염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과 정부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사회구성원 특히, 경제주체로서의 개인, 기업, 정부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합적 차원의 책임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 책임은 경제의 3주체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책임인 ISR(Individual Social Responsibility), 정부의 사회적 책임인 GSR(Governmental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구분됨.
- 이하에서는 청원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검토함.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각종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¹⁾의 제정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소셜슈머²⁾, 공정무역³⁾, 사회책임투자⁴⁾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으며,

-
-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 표준화기구의 약자이며, 지적 활동이나 과학·기술·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한 국제기구를 말함
ISO26000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 중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환경, 인권, 노동 등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 및 정부와 NGO에 지배구조의 개선, 인권 신장, 노동관행 개선, 환경보호와 공정거래 등을 통해 소속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출처:네이버 지식백과사전)
 - 2) 소셜슈머(socialsumer) : 사회(SOCIAL)와 소비자(conSUMAR)의 합성어로서 소비자 개인의 만족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혜택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키는 사회활동가로서의 소비자를 가리킴.
 - 3) 공정무역(fair trade) :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
 - 4)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담배, 술 등을 판매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나 반윤리적 기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

- 국제 무역측면에서도 타국 수출기업에게 사회적 책임경영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도적으로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의 무역장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의 협력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조달에서도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포함한 종합심사낙찰제가 '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용역·물품 분야에도 확대될 예정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기업활동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항목이 세계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분야 37개 항목을 선정하고 있음.⁵⁾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령제정 현황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5) 참고1 참조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이라고 정의하면서, 제62조의 7에서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2조의 8과 9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⁶⁾을 수립 시행할 것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⁷⁾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외에도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한 「산업발전법」,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호법」, 기업과 소비자 및 기업간 거래에 있어 책임윤리를 강제하는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2곳임.

6)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2017~2021)」 수립·시행 중

7)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를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14. 3월)

- 경기도는 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RS(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16년 6월에 제정하였음.
-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 소속 공공기관과 도 출자·출연기관, 도내 중소기업,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협력회사, 국제사업 기반의 서비스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고,
- 이들이 관리해야할 사회적 책임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 체계 구축,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운영 체계 구축 등 11개 항목을 예시하고 있음.
- 경기도지사는 이들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시책개발, 운영지침·교육프로그램·자가진단지표의 개발과 공급의 책무가 있으며,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과 지원사업 적용에 우선권을 제공하며 공공입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 조례」를 '16년 10월에 제정하였음.

- 대전광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분류표 제작사업과 전용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우수기업 및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사업 등을 수행하며,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⁸⁾

마. 대구광역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18년에 대구시 시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CSR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아젠다로 선정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사회책임경영 확산전략 및 사회적 기여도 지표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의 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고,
-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 조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사회 등 지역사회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지원·장려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사회적

8) '17년 7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에 위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 중단.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육성·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원인이 원하는 조례로 보기는 힘들 것임.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지역 동향

-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20여개 기업으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시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취약층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구경북 36개 기업으로 대경CSR클럽을 결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와 기업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고,
- 대구의 공사·공단⁹⁾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¹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이 주요 지표로 들어간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
-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사회책임경영 확산전략 및 사회적 기여도 지표개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지역 1,2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소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71%, 도입계획이 있거나 도입중인 업체가 73%로 나타났음.

9) 참고2 참조

10) 참고3 참조

5. 검토의견

-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경제적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환경오염 등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으로써, 주체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책임(I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으로 구분되며, 본 청원은 그 중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자연환경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도 각자의 영역마다 근거법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청원의 대상인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미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기업이 원할 경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권·노동·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개별법이나 조례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공공기관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이 주요 지표로 선정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의 중복성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본 청원의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조례 제정 시에도 조례의 제정 시기, 적용대상 및 범위, 사회적 책임 지원기구 설치 여부 등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지침·교육프로그램·자가진단지표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임.

참고 1

ISO26000 평가항목

연번	분야	내용
1	조직 거버넌스	의사결정 프로세스구조
2	인권	정당한 배려(실사)
3		인권위협사항
4		공모회피(연루/공모회피)
5		고충처리
6		차별과 취약집단
7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8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9		직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10		노동관행
11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12	사회적 대화	
13	직장에서의 보건과 환경	
14	인적자원 개발과 훈련	
15	환경	오염방지
16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17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18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19	공정운영관행	부패방지(반부패)
20		책임있는 정치참여
21		공정경쟁
22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제고
23		재산권 존중
24	소비자 이슈	공정한 마케팅, 사실적이고 공정한 정보 및 공정한 계약관행
25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보호
26		지속가능한 소비
27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28		소비자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29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30		교육과 인식
31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
32		교육과 문화
33		고용창출 및 기능개발
34		기술개발과 접근성
35		부와 소득 창출
36		보건
37		사회적 투자

참고 2**대구광역시 공사·공단 현황(2011월 기준)**

연번	기관명	대표자	설립일	정원(명)	비고
1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95.11.20	2,547	
2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88.08.17	164	
3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93.04.26	313	
4	대구환경공단	정상용	'00.07.01	437	

참고 3**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20.11월 기준)**

연번	기관명	대표자	설립일	정원(명)	비고
1	(주)엑스코	서장은	'95.07.24	68	
2	대구의료원	김승미	'83.07.01	572	
3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91.06.18	85	
4	대구신용보증재단	황병욱	'96.11.07.	103	
5	대구테크노파크	권 업	'98.12.02.	206	
6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현	'01.12.01.	57	
7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윤집	'06.12.01.	44	
8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이경애	'08.04.07.	58	
9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09.04.16.	66	
10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일선	'12.06.05.	24	
11	대구오페라하우스	박인건	'13.10.25.	35	
12	대구사회서비스원	김영화	'19.03.04.	24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7. 토론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채택 및 본회의 부의(출석위원 전원찬성)

9. 첨부서류

- 의견서 1부 : [붙임1]
- 제출원안 : [붙임2]

[붙임1] : 의견서

청원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의견서

- 청원명 :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대구광역시의회

- 채택의견
 - 2020. 10. 15 청원자 강금수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된 본 청원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관련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성과평가와 관리·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요청하는 것임.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윤추구과정에서 나타난 저임금, 불합리한 근로조건,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이 바람직하고,
 - 공공기관의 경우,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이 주요지표로 들어간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는 평가를 통한 간접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발전법」은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며,
- 대구시는 다수의 조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영역만 규정하고 있고, 대상 또한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사회 등 지역사회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붙임2] : 제출원안

청 원 서

제목: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청원취지 〉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전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2017년 시정혁신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혁신 과제로 채택하여 대경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보고서를 만든 바 있으므로 이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계획과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성과 평가와 관리, 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을 시민청원인들과 함께 청원합니다.



〈 청원내용 〉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

1. 책임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설정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활동
-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등

2. 적용대상 및 범위

- 시 소속 공공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 시내 중소기업,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협력회사, 국제사업 기반의 서비스 중소기업 등

3. 기본계획 등의 수립: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4. 사회적 책임 지원지구 설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지문, 컨설팅 등) 및 관련 교육 사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 평가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업
- 우수기업 선정,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

5. CSR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 정기적인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
- 포상과 지원 사업 적용에 우선권 제공 및 공공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등

※ 첨부자료

1. 시민청원 참여자 명부
2.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조례
3. 대전광역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

2020. 10. 15

청원인 :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연락처 :

첨부2)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6.06.07.]

(제정) 2016-06-07 조례 제 52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관리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1.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2.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3. 통합 리스크 예방과 관리
4.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활동
5.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6. 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7.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9.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10.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
11.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회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책임성 강화, 기업 활동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등 기업이 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활동을 말한다(이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한다).

2. “지속가능경영”이란 조직의 운영과 기업 활동에 있어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직의 운영에 있어 경제적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적 보전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란 2015년 9월 25일 전 세계 193개 정상에 참석한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새로운 국제 발전 목표이다. 지난 2000년에 채택되어 15년간 이행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정부·기업·시민단체 모두가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4.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 및 도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소속 공공기관
2. 도 출자·출연기관
3. 도내 중소기업,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협력회사, 국제사업 기반의 서비스 중소기업 등(이하 “해당 중소기업”이라 한다)

제5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및 해당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해당 중소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에 대한 운영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지표를 개발하여 공급하